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 규정

제정	2017. 04. 28. 규정 제132호
개정	2017. 12. 07. 개정 제145호
개정	2018. 02. 23. 개정 제149호
개정	2019. 03. 22. 개정 제175호
개정	2020. 02. 19. 개정 제206호
개정	2021. 12. 21. 개정 제230호
전부개정	2025. 03. 20. 개정 제269호
개정	2025. 09. 05. 개정 제27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국제만화축제’ (이하 “축제“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축제의 명칭은 ‘부천국제만화축제’ 라 하고, 영문 표기는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약칭 BICOF) 로 한다.

제3조(행사의 목적) 만화전시, 만화콘텐츠마켓, 학술행사, 만화이벤트 등의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만화문화의 확산과 만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축제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부천국제만화축제 자문위원회

제5조(설치)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글로벌 만화전문축제로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부천국제만화축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축제기획,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만화계 (학계 및 업계 포함),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부천시민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진흥원 이사장, 원장,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촉일로부터 차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보선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원장은 축제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괄감독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복무보상 등은 ‘전문위원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과 위원 등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해 자문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1. 축제의 주제 선정
2. 축제의 기획,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3. 축제상품 개발 및 수익사업
4. 참가작가 및 기업 선정
5. 축제개최 결과 및 평가보고
6.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참가 신청 및 허가

제9조(참가 신청) ① 축제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E-Mail, 우편 또는 FAX로 접수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참가신청서에 행사 참가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참가자는 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09. 05.>]

제10조(참가자 결정 및 통보) 진흥원은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가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E-Mail로 통보한다.

[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09. 05.>]

제4장 시 상

제11조(시상) 진흥원은 자문위원회의 추천 또는 만화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축제기

간 중 각종 시상을 할 수 있다.

[중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09. 05.>]

제12조(시상 종류) ① 시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만화대상 : 만화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만화출판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매년 부문별로 선정된 우수 만화작품·만화가·기획자·출판사에게 주는 상
2. 공로상 : 국내 만화작가·기업·만화관계자를 대상으로 만화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상
3. 장한 후배상 : 한국만화의 발전에 공이 있고 창작활동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만화가에게 주는 상

② 그밖에 진흥원 또는 자문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상

[중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09. 05.>]

제13조(선정) ① 부천만화대상의 선정은 진흥원의 부천만화대상 운영 규칙에 따른다.

② 부천만화대상 외의 상의 수상자는 만화계의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부천만화대상 등 관련 행정 사무는 진흥원 업무분장에 의한다.
<개정 2025. 09. 05.>

[중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09. 05.>]

부 칙 (2017. 04. 28 규정 제132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변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07. 규정 제145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3. 규정 제149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2. 규정 제175호)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19. 규정 제206호)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1. 규정 제230호)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20. 규정 제269호)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9. 05. 규정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